

大學 財政 지원 정책

金 在 範
(中央大 教育學科)

1. 財政支援의 性格과 必要性

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라 함은 대학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교수·연구·사회봉사라는 대학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로 하게 되는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로부터 부담하여 주는 일종의 행정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재정 보조라고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재정 지원과 재정 보조라는 두 용어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다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재정 보조는 기관 운영이나 활동에 소요될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을 비교하여 부족되는 경비를 정부가 보충해 준다는 의미가 더 강조되는 것이고, 재정 지원은 부족 여부는 큰 관계 없이 기관 운영이나 활동 자체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경비를 보완해 준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지원 대상과 방법에 따라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대분할 수가 있다. 직접 지원이란 대학이 필요로 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가 대상 대학에 직접 제공하거나 교부하여 주고 그 대학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간접 지원은 대학의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정부가 필요할 것이

라고 생각하는 연구비, 해외 연수비, 장학금 등과 같은 성격의 경비를 대상 교직원과 학생 또는 제3의 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주어 결과적으로는 대학 자체의 기능 수행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지원이라고 하겠다. 간접 지원에는 대학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법령의 제정, 기금의 마련, 제도의 고안 등과 같은 사항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 한편 지원하려는 내용이러든지 목적에 따라서 일반 지원과 특별 지원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즉 일반 지원은 대학의 일상적 또는 정상적인 활동 내용 전반에 대하여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서 매 회계 연도를 주기로 하여 반복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성격의 것이며, 특별 지원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활동과 내용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비주기적이고 지정한 목적 이외의 활동에는 지출할 수 없는 한정된 성격의 지원이라고 하겠다. 첨언하여 둘 것은 일반 지원과 특별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보통 교부금과 특별 교부금의 성격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 내지 보조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 내지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교육이 교육을 받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자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자국내의 대학에 대해 오래 전부터 직·간접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점차로 그 지원의 폭과 양을 확대해 가려는 경향과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둘째, 대학의 유지·경영과 발전에 소요될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조달해야 한다는 사실이 공인되고 있음에도 물가의 상승, 국민의 부담 능력의 한계 등 재정 정책적 입장으로 학부형과 학생이 부담해야 할 납입금의 한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정부가 직·간접으로 규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대학은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대가로서 납입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납입금은 현대적인 대학 제도가 성립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존속되어 오고 있는 대학의 주된 경비 조달 방식의 하나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납입금은 전통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인 대학이 지원자, 입학 정원, 제공하는 교육의 질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교육비의 규모가 방대해지자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국민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수익자 부담, 즉 납입금도 대학이 자율적 내지 단독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서 차선책으로 정부는 규제하는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지고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하겠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우리 대학이 재정 압박을 받아 온 지 오래 되었으며 상당 수의 대학은 이미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에 있어서 재정 압박이란 기준 재정 수요액에 비하여 기준 재정 수입액이 부족하여 대

학이 교육 활동 계획을 축소 조정하고 그러한 상태가 심화되어 부채를 지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재정 압박을 받게 되면 일정한 기준을 유지해야 될 대학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도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되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흥망과 존폐의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학의 관리와 운영에서 재정 압박이라는 현상은 대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취급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 압박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위험 수준에 와 있고 또 일부 부실한 사립대학에 국한된 문제라 보기보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대학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몇몇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재정 압박의 정도가 심화되어 많은 부채를 지고 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의 재정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우리의 대학은 부실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또 대학간에 존재하고 있는 교육 수준의 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의 교육 여건이란 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교수 대 학생비, 교수당 연구비, 학생당 교육비, 실험·실습 기재 보유율, 교수 확보율 등을 의미하고, 교육 수준은 교육 내용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뜻한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사회·경제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의 수요 증대에 힘을 입어 양적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발전하여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크게 확대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교육을 받은 개인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 당국과 대학

은 오랫동안 질적인 발전을 소홀히 취급하여 왔기 때문에 교육 여건과 교육 수준은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지역간·대학간에는 교육 여건 및 교육 수준에 심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폭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어서 이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학교육협의회가 1985년에 작성 보고한 「대학기관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대상 108개 대학 중 교수 확보율이 11%에 불과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9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도 상당 수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도 문제는 심각하다. 또한 교육계에서는 우리 대학의 교육 여건과 교육 수준을 선진 제국과 비교하여 불만과 우려를 표명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고 그 원인이야 무엇이든, 어디에 있던 우리의 대학이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서서히 상실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정부 당국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 성장, 생활 수준의 향상, 정치·사회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대학에 대해 새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도 앞으로 다가올 불투명한 미래 사회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대학이 새로운 역할을 해주도록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와 기대를 대학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은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20여 년간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 국민 소득의 증대, 생활 수준의 향상, 그리고 자율화·민주화 등 급격한 정치·사회적 상황의 변화는 학생들의 의식 구조와 더불어 생활 양태를 변형시켜 놓았다. 따라서 학생들은 실천의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대학 당국에 의해 구태의연한 학습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어 줄 것과 아울러 학교 생활과 관련된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가 획기적으로 증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요구는 더욱 강하게 증대될 것이라는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학생들은 현재 그들이 부담하고 있

는 납입금이 과중하므로 경감시켜야 하고 장학금은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리상의 모순을 노정시키고 있다. 한편 고도한 지식·기술·정보 산업이 그 주축을 이루게 되고, 첨단 기술 개발, 무역 등 각 방면에서 국제 경쟁이 극도로 심화되리라 예상되는 미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 각계에서는 우리 대학에 대해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해 줄 것을 강조하고,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변모해 줄 것을 기대하며 또 우리의 대학이 계속적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을 선도해야 된다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늘 우리의 대학이 이러한 학생들의 주장, 국가·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그러나 대학이 스스로 이러한 재정 소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은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은, 첫째로 대학간에 존재하고 있는 교육 여건과 교육 수준의 차이를 해소시켜야 되고, 둘째로 대학으로 하여금 국가·사회 및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세계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수준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국가가 대학교육에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2. 政府(문교부)의 財政支援 分析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 지원 규모 자체의 대소와는 관계 없이 오래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대학(교)에 대하여 재정 지원 또는 재정 보조를 하여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재정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 종합 예산서를 분석해야 할 것이나 시간과 자료의 부족으로 본고에서는 문교부 소관의 예산서만을 개략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관련 항목만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정부의 종합 예산서를 분석해 보지 않더라도 최소한 문교부, 과학기술처, 체육부, 재무부, 문화공보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

처·청에는 직·간접으로 대학(교)과 관련을 맺고 있는 사업과 예산이 어느 정도는 확보·계상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교부는 대학교육에 관한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과학기술처는 과학 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대학교육과 대학(교)과는 직·간접으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체육부는 체육과 사회 체육 등의 여러 문제를 취급함으로써 역시 관계를 갖게 되고, 재무부의 경우에는 대학(교) 또는 학교 법인에 관계되는 조세(면세) 정책을 취급함으로써 역시 관계를 갖게 되고, 재무부의 경우에는 대학(교) 또는 학교 법인에 관계되는 조세(면세) 정책을 취급함으로써 관련을 가질 뿐 아니라, 특히 산하에 세무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다른 대부분의 부·처의 경우에도 연구·용역비, 위원회 운영 등과 같은 경비를 예산 중에 다소나마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1988년도 문교부 예산 개요서를 보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보조와 관련된 사항을 주관 부서별로 사업 내역과 예산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재정 지원과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학교육

- ① 사립 공과대학 실험·실습 시설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2,600 백만 원)
- ② 사립대학 시설 확충 장기 융자금 이자 보전(1,665 백만 원)
- ③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및 외국어 연수원 보조(443 백만 원)
- ④ 국립대학(교) 교원 연구비 보조(9,401 백만 원)
- ⑤ 특성화 공과대학 외국인 교수 초청(137 백만 원)
- ⑥ 특수 전문 요원 교육 : 석사 출신(1,123 백만 원)
- ⑦ 대학별 특성학과 육성(119 백만 원)
- ⑧ 한국체육대학 기성회 보조(212 백만 원)
- ⑨ 대학 우수 졸업자 시상(22 백만 원)
- ⑩ 대학 운영 지도 육성(19 백만 원)

- ⑪ 국립대학교 병원 진출금(4,877 백만 원)
- ⑫ 기타 사업(48 백만 원)
 - 교육 정책 및 교련 교육
- ① 대학생 국제 교류와 건전 활동 지원(956 백만 원)
- ② 국민 정신교육 자료 개발 및 연구 단체 육성(203 백만 원)
- ③ 대학의 이념 비판 교육(131 백만 원)
- ④ 학술 연구비 지원(16,860 백만 원)
- ⑤ 대학 교수 국비 해외 연구(1,973 백만 원)
- ⑥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 지원(6,546 백만 원)
- ⑦ 이·공계 박사과정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437 백만 원)
- ⑧ 국사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40 백만 원)
- ⑨ 국제 학술 회의 지원(209 백만 원)
- ⑩ 대학생 교련교육(4,569 백만 원)
- ⑪ 고전 국역 사업(853 백만 원)
- ⑫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1,700 백만 원)
- ⑬ 기타 사업(56 백만 원)
 - 사회국제교육
- ① 국비 유학(4,312 백만 원)
- ② 국제 회의 참가(40 백만 원)
- ③ 국제 학술·교육 교류 증진(623 백만 원)
- ④ 개방대학 교원 연수(24 백만 원)
 - 교직 관리
- ① 교육대학 해외 연수(26 백만 원)
- ② 교원대학교 및 교육대학 기성회 국고 보조(607 백만 원)
 - 과학교육
- ① 사립 공업전문대학 실험·실습 시설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2,700 백만 원)
- ② 사립 전문대학 실험실습비 국고 보조(811 백만 원)
- ③ 사립 전문대학 현장 실습비 국고 보조(181 백만 원)
- ④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 연구소 지원(301 백만 원)
- ⑤ 전문대학 관리(166 백만 원)
- ⑥ 기타 사업(74 백만 원)

• 장학편수

① 학생 수련(150 백만 원)

② 국어연구소 운영(221 백만 원)

• 교육 시설

① 교육 시설 관리(64 백만 원)

② 교육 차관 시설(각급 학교, 62,796백만 원)

• 산하 단체 지원

① 정신문화연구원(4,041 백만 원)

② 서울대학교 병원(3,548 백만 원)

③ 한국학술진흥재단(1,321 백만 원)

④ 한국대학교육협의회(387 백만 원)

⑤ 금요공과대학 지원(224 백만 원)

• 국립 교육 기관

① 국립대학 부속병원 특별 회계—전남, 경북, 부산, 충남, 전북, 경상—(96,851 백만 원)

② 국립 교육 기관—운영비, 시설비—(145,945 백만 원)

문교부 소관의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을 분석·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문교부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은 명목상 3조 6천여 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 일반 예산 총액의 20.6%나 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각급 학교별로 실제 예산액을 학생당, 학급당 또는 교원당 경비로 환산하여 본다면 상대적으로 단위당 경비는 소액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단위당 경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문교부 소관 일반 회계 예산 중 거의 대부분은 초·중등학교에 관계되는 경비인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으로서 문교부 예산 총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교본부 및 직속 기관의 예산 총액은 1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문교본부 및 직속 기관의 예산 중에는 교육 기관비, 즉 국립대학의 경비도 포함되어 있다).

세째, 문교본부 및 직속 기관 예산 중 국립대학의 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교육 기관의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이고, 문교부 소관 일반 회계 예산 총액 중 교육 기관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하여 대학 관계 경

비의 비중은 극히 적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것이다(교육 기관의 예산내에는 국립의 초·중등 및 특수 학교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네째, 문교부 소관 일반 회계 중 순수하게 사립대학(교)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 내용은 이미 앞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6개 항목에 불과하고 그것도 전문대학까지 포함한 것이며, 책정된 금액도 보잘 것이 없을 정도로 적을 뿐만 아니라 문교부 소관 예산 총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0.2%)이라는 면에서는 더욱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財政支援上의 問題點

교육 경비나 교육 재정에 대한 과거의 논의들을 분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절대 규모의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과 확보된 교육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일이 주요한 과제로 취급되고 있다. 절대 규모 또는 최소한도로 필요한 교육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 활동의 내용과 교육의 질 또는 또는 교육 수준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며 또 교육비를 합리적으로 배분 혹은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지역간·학교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로 보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내지 재정 보조에 관한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정부가 대연도 별로 대학에 지원해 주어야 할 최소한의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과 확보된 경비를 합리적으로 배분·지원하는 일이 역시 중요하다고 하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상의 문제는 편의상 재정 지원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 지원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련된 문제, 확보된 재정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정부는 대학에 대해 재정 지원을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재정 지원의 근본 취지,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대상, 시기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성문화

한 종합적인 단일 규정이 없다는 것과 기존의 여러 관계 법령내에도 구체적인 명문 조항으로 삽입하여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원천적인 문제로 지적할 수가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과 보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지 못하였고, 또 지원의 규모 자체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둘째,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여 주기 위해 필요한 기준 대학 지원 재정 수요액, 다시 말해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재정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데 없어서는 아니될 근거와 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임에도 아직도 매년 예산 편성 때마다 주무 예산 당국과 행정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매년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담당자에 따라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규모 자체도 유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문교 당국이 장기적인 대학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 지원할 수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배분의 합리성은 부족한 재원으로 교육의 평등성을 실현하고, 공정성을 보장하며,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는지 또 대학간에 존재하고 있는 교육 여건과 교육 수준의 현격한 차이의 해소,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필요와 요구의 충족, 일정 수준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문제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이러한 사항을 충족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국립대학에 대한 집중·우선 지원과 국립과 사립대학간 세제 혜택, 납입금의 차등 정책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해 둔다.

네째,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나치게 금전적인 것에 집착하고 비금전적인 면의 지원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정부와 대학의 안목과 관점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겠다.

다섯째, 사립대학 스스로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또 받으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겠다.

끝으로 재정 지원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접언하여 둘 것은 정부 당국이나 학계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보조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4. 政策 正립을 위한 示唆

대학이 개인의 성장·발달과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완전한 수익자 부담(납입금) 원칙에 의하여 대학(교) 운영비를 조달한다는 정책을 실천하지 못하는 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재정 보조는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선진 제국과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학도 국제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해야 하고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의 기본 정책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당국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보조에 관한 취지·목적·방법(기준 대학 지원 제정 수요액)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행 재정 지원의 객관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지속적인 평가와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